

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 
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권영식 의원 발의】



2019. 9. 27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155호로 2019년 9월 19일 권영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돌봄 종합계획 수립(안 제5조)
- 다. 돌봄 사업 및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(안 제6조 ~ 안 제8조)
- 라. 돌봄 시설 설치 · 운영 등(안 제9조)
- 마.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(안 제12조 ~ 안 제16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19. 9. 11. ~ 9. 16.) 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건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돌봄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장 총칙(안 제1조~제4조)에서는 조례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
- 안 제2장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(안 제5조~제9조)에서는 돌봄 종합계획 수립, 돌봄 사업 및 서비스 지원, 돌봄 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3장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(안 제10조~제11조)에서는 돌봄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4장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(안 제12조~제16조)에서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, 구성, 위원의 임기 및 해촉,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.

- 최근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지만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  
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,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 1

## 아동복지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~ ⑦ (생략)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-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50조(아동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